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재해대책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한다.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기타의 사유”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한다.

제17조제2호중 “가능성이 없는 때”를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때”로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중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를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로 하고

안 제11조제1항제9호 및 제12조제1항제19호중 “경제여건변화,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환경오염방지”를 “경제여건변화, 환경오염방지”로 하며,

안 제13조제2항 중 “준공업 지역안의 용자 대상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를 “준공업 지역안의 용자 대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중소기업시설자금”(이하 “시설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과 아파트형공장건설·시장재개발·시장시설개선·공동창고설치·점포시설개선·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중소기업지원시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창업보육, 시제품·기술·연구개발 등을